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주식회사



-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 계약갱신: 1년씩 자동 갱신
- ◇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이 계약 제72조에 따름
 - *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 통지로 갱신거절
- ◇ 납 기 일: 개별계약에 따름
- ◇ 계약금액: 개별계약에 따름
- ◇ 지연이자요율: 이 계약 제32조 제6항에 따름
- ◇ 지체상금요율: 이 계약 제24조에 따름
- ◇ 목적물 납품의 절차: 이 계약 제23조 및 개별계약에 따름
-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이 계약 제7절에 따름
- ◇ 하자담보책임: 이 계약 제43조에 따름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주식회사(이하 “엘지마그나” 라 함)와 “수탁인”은 자동차 부품(부속품 포함), 자재·기기 또는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함)의 제조·개발·공급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양당사자 간의 위탁 거래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 품질·납기 보증계약, 납품수량 보증계약, 구매확인서 전환 계약(이하 품질·납기 보증계약, 납품수량 보증계약, 구매확인서 전환 계약을 일괄하여 “부속계약” 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기타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 (계약 및 개별계약)

1.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목적물”의 “제조 등”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단가, 납기·납품장소, 검사의 방법·시기, 납품대금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이 계약 또는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일일이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엘지마그나”가 제2항의 기재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재 사항은 “부속계약”에 따르기로 함)를 “수탁인”에게 교부하여 “목적물”을 발주(이하 “발주”라 함)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수탁인”이 발주서의 인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5.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이 “목적물”의 “제조 등”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 또는 발주서 등을 “수탁인”에게 발급한다.
6. “수탁인”은 견적서 또는 기타 문서에서 “엘지마그나”에게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한 물량에 대해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엘지마그나”에게 보증한다.
7.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 대하여 어떠한 일정 물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발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추정)

1.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이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인”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엘지마그나”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수탁인”이 “엘지마그나”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 나. 납품대금
 - 다. 위탁일
 - 라.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 마. 그 밖에 “엘지마그나”가 위탁한 내용
2.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으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탁인”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3.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내용증명우편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하기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i.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다.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엘지마그나”의 사업장책임자, 임직원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 임직원 등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특약설정)

1.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특약의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탁인”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제5조 (발주)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 대하여 제2조 제3항에 의거 “목적물”을 “발주”함에 있어 “수탁인”이 “목적물”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인”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주 계획을 예고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공정 의무)

1.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 (이하 “비위행위”라 함)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한다.
2.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임직원을 상대로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8조 (고객사 계약과의 관계)

“엘지마그나”가 “목적물” 또는 “목적물”을 결합한 “목적물”을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수탁인”은 고객사가 “엘지마그나”에게 요구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 계약상 “수탁인”에게 적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관계자료의 제출

제9조 (관계자료의 제출)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와의 거래를 개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의거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업태조사서
 - 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라. 기타, “엘지마그나”가 거래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수탁인”의 재무상태 및 업계 신용도, 계약의 이행 가능성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인”에게 요구하는 자료
2. “수탁인”은 제1항의 제출 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엘지마그나”에게 그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 “엘지마그나”가 적시에 그에 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1. “엘지마그나”는 “제조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탁인”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탁인”은 “엘지마그나”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협조한다. 다만, “수탁인”이 즉시 협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인”의 동의를 받고 “수탁인”의 사업장, 공장, 생산 및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탁인”은 사업장 및 공장 등에 화재, 유해물질 유출, 정전, 설비파손 등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엘지마그나”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재료 및 부품의 지급 및 설비 등의 대여

제11조 (지급품)

1.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 등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수탁인”의 요청이 있어 “엘지마그나”가 승낙한 때에는 그 재료 및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지급품”(이하 “유상 지급품”이라 함)의 소유권은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에게 그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엘지마그나”에게 유보되고,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지급품”(이하 “무상 지급품”이라 함)의 소유권은 언제나 “엘지마그나”에게 있다.
2. 제1항의 “지급품”의 인도장소는 원칙적으로 “엘지마그나”의 사업장 내로 하고, 기타 “지급품”의 유·무상성 여부, 인도일, 품명·수량, 대금가액·지급방법 등 그 조건과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엘지마그나”가 “지급품”을 “엘지마그나”의 지정업자를 통하여 “수탁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탁인”은 “지급품”을 인수한 즉시 인수 증명서를 “엘지마그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수탁인”은 “지급품”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 등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위 검사 당시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를 “목적물”의 “제조 등”의 과정 중에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하여 “엘지마그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엘지마그나”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5.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체품 또는 수량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6. “수탁인”이 제3항,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납기 지체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손해를 입은 경우, “수탁인”은 이를 이유로 “엘지마그나”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7. “유상 지급품”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부분에 대해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엘지마그나”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급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대여품)

1.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 등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수탁인”의 요청이 있어 “엘지마그나”가 승낙한 때에는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치공구, 측정구, 금형, 설비 등(이하 “대여품”이라 함)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품”의 내역, 대여기간, 차임 등은 양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 “수탁인”은 “대여품”을 인도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서

면으로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하여 “엘지마그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통지가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체품을 제공할 수 있다.

3. “수탁인”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하자가 생기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인”은 이를 이유로 “엘지마그나”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1. “수탁인”은 “지급품(대금이 완제된 “유상 지급품”을 포함함)” 및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며, “엘지마그나”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 나. 제3자에게 매각, 대여 또는 담보권 설정 등
 - 다. 그 밖에 “엘지마그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2. “수탁인”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관하여 “엘지마그나”의 소유품(대금이 미완제된 “유상 지급품” 및 “무상 지급품”의 경우) 또는 “엘지마그나”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대금이 완제된 “유상 지급품”의 경우)임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탁인” 고유의 소유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엘지마그나”의 소유품 또는 “엘지마그나”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임이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은 “수탁인” 고유의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엘지마그나”의 “지급품” 및 “대여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수탁인”의 책임으로 이행한다.
4. “수탁인”은 “지급품”의 잔재, 단재, 절분 등을 “엘지마그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엘지마그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탁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한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엘지마그나”는 제5항의 조사 결과 “수탁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인”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수탁인”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절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엘지마그나”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엘지마그나”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8. “수탁인”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나 기타 일반 채권자로부터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품” 및 “대여품”이 “엘지마그나”의 소유품 또는 “엘지마그나”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임을 밝혀서 해당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의 사실 및

- 경위를 지체 없이 “엘지마그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엘지마그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언제라도 “엘지마그나”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은 대금이 미완제된 “유상 지급품”, “무상 지급품” 및 “대여품”을 즉시 “엘지마그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멸실, 훼손)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지급품” 및 “대여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엘지마그나”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원상태의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상 지급품의 가공 불량 시 손실 부담)

“수탁인”은 “무상 지급품” 중 무상 지급한 재료 등의 가공 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대한 손실률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불량 대치분에 상당하는 가공비를 부담하며, “엘지마그나”에게 당해 재료 등의 지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용 손실률, 부담 가공비와 배상액 및 그 지급 방법 등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품목별, 재료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유상 지급품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1. “엘지마그나”는 “유상 지급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나.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른 “엘지마그나”의 “수탁인”에 대한 상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4절 금형 제조 등

제17조 (금형제조 및 관리)

1.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수탁인”에게 제조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형 제조비의 지급방식 등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금형의 소유권이 “엘지마그나”에게 있는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동의 없이 금형을 본 계약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형의 소유권이 “수탁인”에게 있는 경우라도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동의 없이 금형을 본 계약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로써 금형을 관리, 운영한다.
4. “수탁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엘지마그나” 소유의 금형에 대한 “엘지마그나”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엘지마그나”에게 통보하여 재산권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금형이 “수탁인”의 소유인 경우라도 전항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금형의 정상적인 관리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부품의 지속적인 수급을 위하여 “수탁인”에게 금형의 적정가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제5절 단가 및 납품대금

제18조 (단가 또는 납품대금의 결정)

1. “목적물”의 단가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거쳐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2.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단가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단가결정이 지체될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4. “엘지마그나”는 부당하게 “수탁인”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납품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의 조정)

1.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탁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탁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엘지마그나”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납품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퍼센트

다. 노무비가 납품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라.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마.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수탁인”을 대신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5.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엘지마그나”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라.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마.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품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7. 납품대금의 조정은 “수탁인”이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비와 노무비에 적용하되,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납품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엘지마그나”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1. “엘지마그나”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엘지마그나”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엘지마그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탁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탁인”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엘지마그나”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탁인”에게 증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5. “엘지마그나”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32조 제6항을 준용하고, 추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 할인료에 관하여는 제32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6절 납 품

제21조 (납기)

“납기”란 “수탁인”이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장소에서 “엘지마그나”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기일을 말한다.

제22조 (납기의 변경)

1. “수탁인”은 “납기”를 지켜 “엘지마그나”의 주서면에 따라 “목적물”을 “엘지마그나”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인”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실제 납품 예정일을 “엘지마그나”에게 서면 통보하여 “엘지마그나”의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엘지마그나”는 사정 변경 기타의 사유로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일자를 “수탁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수탁인”이 당해 “목적물”의 “제조 등”에 있어 작업을 완료하였거나, 작업 중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23조 (납품방법)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정한 절차에 의거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장소에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목적물”을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인수증”이라 함)를 “수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 “엘지마그나”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사양서, 취급설명서, 검사성적서, 예비품 등을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엘지마그나”가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만약 “수탁인”이 이를 위반하여 분할 납품을 하였을 경우 “엘지마그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분할 납품을 납품으로 인정하거나, “수탁인”의 위험 부담 하에 일시 보관만을 할 수 있다.

제24조 (납기지체배상)

1. “수탁인”이 제21조에서 정한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엘지마그나”는 그 지체로 인한 영업손실, 프리미엄 항공료 등 빠른 배송을 위한 배송비, 생산라인 비용, 대체 공급업체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에 따른 손해 기타 “엘지마그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수탁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공식에 따른 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 판매차질 비용은 상호 합의하여 손해액을 결정한다.
$$\text{손해배상액} = \text{“엘지마그나”의 해당 공장 총가공 임율}(\% / \text{HR}) \times \text{무 작업시간}(\text{M.HR}) + \text{판매차질 비용}(= \text{판가} \times \text{이익율} \times \text{판매차질 수량})$$
2.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3. “엘지마그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납기지체 배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나. “엘지마그나”의 책임으로 “제조 등”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 등”이 중단된 경우
 - 다. “수탁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엘지마그나”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 라. “수탁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엘지마그나”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 마. 기타 “수탁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나.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5. “엘지마그나”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지마그나”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탁인”은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엘지마그나”에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7.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이 “개별계약” 상에 명시된 납품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탁인”의 납품에 따른 “목적물”의 인수를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수 지체 및 거부로 인하여 “수탁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장, 운송 기준의 준수)

1. “수탁인”은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는 “엘지마그나”가 정한 포장시방, 포장수량 기타 포장 기준 및 운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전항의 포장에 있어 “목적물”의 겉포장에 입고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분실된 경우는 “수탁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의 금지)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엘지마그나”가 제1항에 따른 인수 거부나 지연 중 “엘지마그나”와 “수탁인”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엘지마그나”가 부담한다.
3.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수탁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탁인”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 검 사

제27조 (검사)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이 “목적물”을 납품할 때마다 양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검사하여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엘지마그나”의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엘지마그나”는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수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에 “납기”를 준수(이하 “납품완료”라 함)한 것으로 본다. 단,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수하는 때 달리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시점에 “수탁인”이 “납품완료”한 것으로 본다.
3. 검사는 “엘지마그나”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며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같다.
4. “엘지마그나”는 검사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기간 중 “엘지마그나”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5.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품으로 분류된 “목적물”(이하 “불합격품”이라 함)은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발급한 “인수증”에 기재된 수량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6. “수탁인”은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한 4M(사람·재료·방법·기계) 중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엘지마그나”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엘지마그나”가 “목적물”을 검사한 결과 동일한 내용의 불량률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인”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하여 “엘지마그나”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불합격품, 부족분 및 과다 납품분의 처리)

1. “수탁인”은 제27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엘지마그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엘지마그나”가 정한 기한 내에 수량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인”은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본래의 납기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수탁인”은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품”을 “엘지마그나”가 정한 기간 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만약 “수탁인”이 이 기간 내에 “목적물”을 회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엘지마그나”는 이를 “수탁인”의 비용으로 반송하거나 “수탁인”과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 “엘지마그나”가 “불합격품”을 보관하는 동안 “엘지마그나”의 귀책 사유 없이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위험은 “수탁인”이 부담한다. 다만, “엘지마그나”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엘지마그나”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7조에 따른 검사결과 “목적물”의 과다 납품분의 처리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불합격품이 “엘지마그나”가 지급한 “지급품”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엘지마그나”가 부담한다.

제29조 (재검사)

1. “수탁인”은 제27조의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엘지마그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인”의 재검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재검사 의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2. 전항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아래를 원칙으로 한다.
 - 가.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엘지마그나”.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탁인”이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탁인”이 부담한다.
 - 나.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수탁인”

제30조 (중간검사)

“엘지마그나”는 이 계약상 위탁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제조 등”의 과정 중에 “수탁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목적물”의 공정·품질관리 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간검사 할 수 있다. 단, 이는 “수탁인”에게 사전 서면 통지 후 “수탁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제31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납품완료”된 시점에 “수탁인”으로부터 “엘지마그나”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단, 대금이 미완제된 “유상 지급품” 또는 “무상 지급품”이 “목적물”의 “제조 등”에 있어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소유권은 “납품완료” 전이라도 “엘지마그나”에게 있으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절 지 급

제32조 (납품대금의 지급)

1.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에 대한 납품대금을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급 방법 및 기일에 의거 “수탁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법” 제13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타 관계 법률상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납품이 빈번하여 양 당사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날에 위 각 법이 정한 방법으로 “수탁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2. “수탁인”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엘지마그나”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인”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인”이 부담한다.
3. “엘지마그나”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4. “엘지마그나”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탁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5. 제4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을 적용한다.
6. “엘지마그나”가 납품대금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 “엘지마그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지급시기에 서면으로 사전 합의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탁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엘지마그나”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선급금의 지급)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있어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수탁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엘지마그나”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엘지마그나”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탁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엘지마그나”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4. “엘지마그나”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은 납품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을 따른다.
5.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엘지마그나”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제공한다.
6. “수탁인”은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엘지마그나”에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7. “엘지마그나”는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탁인”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text{선급금 정산액} = \text{선급금액} \times (\text{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div \text{총 납품대금})$$
9.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이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납품대금의 직접지급 요청)

1. “엘지마그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인”은 발주자에게 수행부분에 상당하는 납품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엘지마그나”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엘지마그나”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직접 “수탁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엘지마그나”, “수탁인”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 다.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탁인”이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탁인”에 대한 “엘지마그나”의 납품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3. “엘지마그나”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탁인”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엘지마그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납품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4. “수탁인”이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납품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엘지마그나”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5조 (부당한 납품대금의 감액금지)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인”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엘지마그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엘지마그나”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엘지마그나”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인”에게 교부한다.
3.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36조 (구매강제 및 부당한 결제청구의 금지)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수탁인”의 원가절감 지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탁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엘지마그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39조에 따른 “엘지마그나”의 “수탁인”에 대한 상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37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엘지마그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대물변제 금지)

1. “엘지마그나”는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엘지마그나”는 납품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가. “엘지마그나”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나. “엘지마그나”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탁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엘지마그나”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탁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 가.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나.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3. “엘지마그나”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탁인”에게 내주고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해당 서면을 관리한다.
- 가. “엘지마그나”가 자료를 제시한 날
- 나. 자료의 주요 목차
- 다. “수탁인”이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라.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마.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9조 (상계)

1. “엘지마그나”는 제3절에 의한 “유상 지급품”의 대금채권, “대여품”의 차임채권, 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기타 “수탁인”에 대한 모든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품대금채권 등 “수탁인”의 “엘지마그나”에 대한 모든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상계는 양 당사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엘지마그나”가 그 명세를 “수탁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절 도면, 사양서 등

제40조 (도면, 사양서 등의 관리)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목적물”의 품질, 규격, 재질 및 성능 등을 기재하여 “수탁인”에게 제공한 도면, 필름, 규격 및 시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함)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엘지마그나”에게 서면 통보하고, “엘지마그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대여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인”은 사용을 완료하거나, “엘지마그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여서류”를 “엘지마그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엘지마그나”가 승낙한 복사·변경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대여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5. “수탁인”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엘지마그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입은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6. “수탁인”은 “대여서류”를 사용함에 앞서 최신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최신판이 아닌 경우에는 “엘지마그나”에게 최신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수탁인”이 이를 위반하여 구판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목적물”의 하자 기타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인”은 이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절 보 증

제41조 (품질보증)

1. “수탁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제조 공정 과정에서 “납품완료” 시점까지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 만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 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문제 개선 대책수립 및 현장 Feed-Back 등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이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재료 또는 부품(이하 “부품 등”)을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부품 등”에 하자가 있거나 “엘지마그나”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수탁인”은 그러한 “부품 등”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하거나 “엘지마그나”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수탁인”의 품질관리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탁인”은 거래 축소 또는 정지 등 “엘지마그나”의 제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수탁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 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변경, 부품 국산화 등의 경우 “엘지마그나”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6. 품질보증에 대한 “수탁인”의 책임과 의무는 필요한 경우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 (친환경 부품의 공급 보증)

1. 양 당사자는 “목적물”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생산 및 납품 활동을 촉진하고, “목적물”의 환경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노력한다.
2. “수탁인”은 “목적물”의 개발·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법, 외국법 및 국제법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제시한 “엘지마그나”의 내부 환경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개발·제조 과정에 사용된 재료나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보관하고, “목적물”의 개발·제조에 따른 제반 시험결과를 “엘지마그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기준과 환경 개선 목표를 정하여 환경안전 개선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인”의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엘지마그나”는 추가적인 개선을 “수탁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탁인”은 제2항에 따른 환경관련 법규 또는 “엘지마그나”의 내부 환경규제기준의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목적물”과 관련한 대외적 Claim 또는 서비스 Claim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일체를 해결하여야 하며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엘지마그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제5항과 관련하여 “엘지마그나”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청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탁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은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국내법, 외국법 및 국제법의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엘지마그나”가 특별히 스스로 정한 내부 환경규제 기준을 사전에 “수탁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
 - 나. “수탁인”이 사전에 “엘지마그나”에게 제시한 환경 관련 서비스 기준, 관리기준 및 권고를 “엘지마그나”가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
 - 다.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납품된 “목적물”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한 문제
 - 라. “목적물”의 사양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유해성을 “수탁인”이 충분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지마그나”가 그 변경을 요청하여 발생한 문제
8. 본 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양 당사자가 개별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하자담보책임)

1. “납품완료” 후 2년(이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라 함) 이내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탁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하자 치유 청구권”이라 함). 단, “수탁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잔여 기간 내지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엘지마그나”는 “하자 치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탁인”이 “엘지마그나”가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치유한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고, 치유에 소요된 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제1항의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하자의 치유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치유와 함께 “엘지마그나”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탁인”이 납품한 “목적물”이나 “수탁인”의 본 계약서상 의무해태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 손해배상청구 및 사후서비스청구가 있는 경우 “수탁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식재산권)

1. 이 계약으로 인하여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 것은 아니며, 그밖에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제3자가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에게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i) “목적물”에 의해 침해되었다거나 (ii) “목적물”을 부품으로 하여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제조한 제품에 의해 침해되었으며 그 침해 성립의 주요 구성 요인이 “목적물”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인”은 법원이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에게 판결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하여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제3자의 손해발생이 제40조에서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수탁인”에게 제시한 “대여서류”에 있는 도면 또는 사양서에 의거한 결과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인”은 제2항의 기재와 같은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엘지마그나”는 “엘지마그나”의 선택에 의해서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직접 방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인”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 방어를 위하여 “엘지마그나”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엘지마그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3항에서의 “수탁인”의 의무에 더해서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으로 인해 “목적물” 또는 “목적물”을 부품으로 하여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제조한 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될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의 선택에 따라 (i) “수탁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3자로부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하거나, (ii) “목적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목적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iii) “목적물”의 제조위탁에 대한 대가로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수탁인”에게 지급한 납품대금 등 총 금액을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

의 자회사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단, 위 (ii)의 경우 “목적물”의 수정은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원래 의도한 “목적물”의 성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절 기술자료

제45조 (기술자료예치제도)

1.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탁인”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함)에 예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수탁인”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 가.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나.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다.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등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
3. 제1항에서 “예치기관”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한다.
4. “엘지마그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엘지마그나”는 유지, 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탁인”이 보유한다.
 - 가. “수탁인”이 동의한 경우
 - 나. “수탁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 다. 기타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5.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탁인”이 부담하되,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6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1. “엘지마그나”는 생산성 및 품질 개선, 공동 기술개발, 하자 원인 규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탁인”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엘지마그나”가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수탁인”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수탁인”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나. “수탁인”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탁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수탁인”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탁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3. “엘지마그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인”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인”과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탁인”에게 교부한다.
 -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 나.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라.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마.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바. 그 밖에 “엘지마그나”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4.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탁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 가.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나.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라.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마.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바. 제 라호 또는 제 마호 위반에 따른 배상
 - 사.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절차
- 5. “엘지마그나”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엘지마그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탁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엘지마그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절 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제47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 1.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지식재산권 등의 귀속과 사용권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단, “엘지마그나”가 연구개발에 소요되

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수탁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은 “엘지마그나”에게 귀속하고, “수탁인”의 기보유기술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가진다.

2. 제1항의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비용분담 등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책임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3. 본 조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등과 관련된 권리귀속, 권리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수탁인”은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절 보수용 부품의 공급

제48조 (보수용 부품 공급 의무)

1. “수탁인”은 “목적물”이 최종 “납품완료”된 날로부터 15년간 “엘지마그나”가 보수용으로 당해 “목적물”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엘지마그나”가 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단가 등 개별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수탁인”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조 (금형 등의 보관)

1. “수탁인”은 제48조 제1항에 정한 기간 동안 소유권 귀속 여하에 불구하고 보수용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필름 및 도면 등을 일체 보관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금형, 필름 및 도면 등을 폐기하기 위하여는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수탁인”이 위 금형, 필름 및 도면 등을 임의로 폐기하여 “엘지마그나”에게 보수용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절 일반 사항

제50조 (위험부담)

“목적물”의 인도 전까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위험은 “엘지마그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엘지마그나”

의 인수거부 또는 지체 중에 “엘지마그나”와 “수탁인”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은 “엘지마그나”의 부담으로 한다.

제51조 (수탁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조치)

1. “수탁인”에게 제59조 제1항 가호 내지 다호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엘지마그나”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위 해지 통고를 받은 즉시 “엘지마그나”에게 “엘지마그나”의 금형, 대금이 미완제된 “유상 지급품”, “무상 지급품”, “대여품”, “대여서류” 기타 “엘지마그나”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자료,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엘지마그나”의 계약 해지 시, “목적물”의 반제품, 완제품의 소유권이 “수탁인”에게 있는 경우라도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그 소유권이 “엘지마그나”로부터 “수탁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엘지마그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반제품, 완제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인수를 위하여 “수탁인”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단, 위 경우 아직 “개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반제품, 완제품에 대하여는 “엘지마그나”의 청구로 인하여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소유권의 이전 및 반제품, 완제품의 인도에 관하여는 본문과 같다.
3. 제1항, 제2항에 따라 “엘지마그나”가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및 “목적물”의 반제품, 완제품의 인도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인”의 대표이사가 잠적 등의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수탁인”의 대표이사는 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탁인”의 근로자 대표 또는 차순위 권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4. 본조와 관련한 “수탁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나, “엘지마그나” 또는 그 임직원이 고소·고발되거나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기타 일체의 비용을 “수탁인”과 “수탁인”의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인” 및 “수탁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대표 또는 차순위 권한자의 무권한을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수탁인”은 금형 및 대금이 미완제된 “유상 지급품”, “무상 지급품”의 반환, “목적물”의 반제품 및 완제품의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엘지마그나”는 무작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됨을 명확히 인식하는바, “엘지마그나”가 보전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6. 본조와 관련한 상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제소전 화해를 구할 경우 “수탁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제조물책임)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엘지마그나”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

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3.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사유로 인해 제3자의 제조물책임의 청구 또는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수탁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는 제2항에 의한 분쟁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5. “수탁인”은 제조물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엘지마그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한도를 30억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제조물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동일·유사품의 제조·판매금지)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엘지마그나”가 제공한 “대여서류”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자신을 위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2. “수탁인”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 (비밀유지의무)

1.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홍수,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소요,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원재료 조달의 불가능 혹은 어려움, 대내외적 노사분규, 운송 등 교통 장애, 대내외적 경제사정의 변동 등은 이 조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이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위임 또는 위탁)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목적물”의 “제조 등”의 의무 기타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 가.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 나.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 다.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방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의 승낙을 얻어 위 각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라도 “수탁인”은 자신의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3. “엘지마그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납품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가. “수탁인”이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 나. “엘지마그나”, “수탁인”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다. “수탁인”이 “재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4. 제3항에 따라 “엘지마그나”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탁인”에 대한 “엘지마그나”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탁인”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5. “엘지마그나”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이미 지급한 납품대금은 공제한다.
6.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 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7.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목적물”과 부정경쟁의 여지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위탁 주문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재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수급사업자”와 사이에서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제1항의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인”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재수급사업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3.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제2항에 따른 “재수급사업자” 대상 지원실적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4. “수탁인”이 제5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5.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대금 지급 시 활용한 지급수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57조의2 (“엘지마그나”의 안전조치 의무)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제조 등”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2. “엘지마그나”는 “엘지마그나”의 근로자와 “수탁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가.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 다. “수탁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라. 작업환경측정
 - 마. 화재, 붕괴, 폭발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탁인” 및 “수탁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사항의 통보
3.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이하 본 조에서 동일)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엘지마그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엘지마그나”의 근로자, “수탁인” 및 “수탁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5.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이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탁인”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엘지마그나”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 나. 작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7. 본 조에 따른 “엘지마그나”의 의무는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57조의3 (“수탁인”의 안전조치 의무)

1. “수탁인”은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수탁인”은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수탁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수탁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5.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엘지마그나”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58조 (기술지원 및 훈련)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하거나, “수탁인”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엘지마그나”의 기술자를 “수탁인”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거나, “수탁인”의 기술자를 “수탁인”의 비용으로 “엘지마그나”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엘지마그나”가 부담한다.

제59조 (입찰담합 위약금 등)

1. “수탁인”이 (1) 입찰을 함에 있어, 입찰자 간에 미리 입찰가격, 입찰 참여 여부 등을 담합하거나 (2)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경쟁 업체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를 정하거나 (3) “엘지마그나”의 임직원에게 부정청탁 등으로 이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등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담합 등”이라 함)를 한 경우 “엘지마그나”에게 위약금으로써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초과부분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수탁인”이 “담합 등”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 조에 따른 배상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60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 “부속계약”,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 자신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나.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정지, 해산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다.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신청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파산·회생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 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임직원이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등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엘지마그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 협력회사 평가기준에 의한 거래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 대표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협의요청, 자신의 의무이행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 상태를 만드는 경우
 - 아. 이 계약과 관련한 “수탁인”의 영업의 주요부분이 양도되거나 인수, 합병된 경우
 - 자. 제3자가 “수탁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취득하게 되거나, “수탁인”의 이사회나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수탁인”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 차. 기타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이 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둔 경우
 - 카. 관련 법령 위반 등 “수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수탁인”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
 - 타. 관련 법령 위반 등 “수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파.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의 내부기준에 따른 평가 또는 점검결과 산업재해예방 수행능력이 엘지마그나의 내부기준 이하로 판정된 경우
 - 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찰시 담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의 책임 없이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하여 불가결한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수탁인”이 작업수행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 당한 경우

다. “수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계약”의 성립 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거부한 경우

라. “수탁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행의 착수를 지체하여 “납기” 내에 “납품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수탁인”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바. 기타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이 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둔 경우

3.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5. “엘지마그나”는 사업정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의 종단을 요청할 수 있다.

6.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와는 별도로,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1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1. “수탁인”은 전조에 따라 이 계약, “부속계약”,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라도 “엘지마그나”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은 “납품완료” 전의 “목적물”(작업 중인 것도 포함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엘지마그나”의 인도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엘지마그나”로부터 제공 받은 대여서류, 대금이 미완제된 “유상 지급품”, “무상 지급품” 및 대여품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엘지마그나”는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목적물”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탁인” 소유의 재료, 기기, 도면, 치공구, 금형, 유상 지급품, “목적물” 재고 등을 제3자에 우선하여 “수탁인”으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유상 지급품은 지급가격을, “목적물” 재고는 납품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2조 (잔존의무)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제43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나.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기술자료예치제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다. 제52조에서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라. 제54조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제63조 (내국신용장)

1. “엘지마그나”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탁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인”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2.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엘지마그나”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64조 (관세 등 환급)

1. “엘지마그나”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탁인”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수탁인”에게 지급한다.
2. “엘지마그나”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도래할 경우 “수탁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수탁인”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3. “수탁인”은 입고마감월의 차월 20일까지 “엘지마그나”에게 환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납증, 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엘지마그나”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5.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 지급하면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협력)

1. “수탁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엘지마그나”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활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재 발효 중이거나 향후 발효되는 FTA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탁인”은 “목적물”의 최초 공급월의 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에 대한 해당 서류는 1회 제출로 1년 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3. “수탁인”은 제2항의 제출자료의 주요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엘지마그나”에게 그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 “엘지마그나”가 적시에 그에 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탁인”은 제2항의 서류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자, 오류, 허위사실(이하 “하자 등”이라 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만일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 등”을 치유하여야 한다.
5. 제4항과 관련하여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하자 등”의 치유와 함께 치유를 하여도 전보되지 못한 손해(원산지증명서 효력이 부인되어 엘지마그나의 해외법인 등에서 특혜관세 적용한 금액이 추징당한 경우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 (사업장의 출입)

1. “엘지마그나”는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출입사유 및 출입 예정일시를 통보한 후 “수탁인”의 동의를 받아 “수탁인”의 영업시간 내에 “수탁인”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및 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은 제41조 제3항의 제3자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 “엘지마그나”가 제3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부품 등”의 제조 공정이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엘지마그나”는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탁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부당한 스카웃 방지)

양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 소속의 종업원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채용할 수 없으며, 퇴사자라 할지라도 퇴사 후 6개월 이내에는 채용할 수 없다.

제69조 (보복조치 금지)

“엘지마그나”는 “수탁인” 또는 “수탁인”이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탁인”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가. “엘지마그나”의 하도급법 위반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행위

나.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엘지마그나”에 대금조정 신청 행위

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70조 (계약의 효력)

1.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은 각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양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또한, 위 각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이 계약 및 “부속계약”과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제2조 제2항의 “개별계약”을 제외하고 이 계약과 “부속계약”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3.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1조 (계약의 변경)

1.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 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2. 계약 변경 시 “엘지마그나”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합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엘지마그나”는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탁인”이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72조 (계약기간)

1. 이 계약 및 “부속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위 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전항에 의하여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당해 “개별계약”의 효력 존속 기간 동안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3조 (손해배상)

1.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이 이 계약, “부속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이 제6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다. “엘지마그나”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74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민·상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 계약, “부속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인천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한다.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2. 구매계약 일반조건
 3. 정도 경영 실천서약서
 4. 엘지마그나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5. 국제무역규제에 관한 법규준수 서약서
 6. Open Source License 관련 확약사항
 7. Open Source Software List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와 “수탁인” 체결된 제조 위탁 거래기본계약(이하 “거래기본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이 “거래기본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정의)

1.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이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 3 조 (비밀의 표시)

1.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 4 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

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거래기본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거래기본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가.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 나.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다.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라.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마.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 바.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2. 각 당사자가 제1항 바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양 당사자가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일을 초과하여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정보수령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의 부존재 등)

1.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2.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4.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절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0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1 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기본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첨부(2)

구매계약 일반조건

이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및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 기타 첨부 및 부속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계약”이라 함)은 본 거래에 적용되는 양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양 당사자간의 이전의 여하한 구두 혹은 서면의 의사교환을 대신한다. 위 각 계약 서류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음으로 “일반조건”, 기타 첨부 및 부속 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제1조 (일반조건의 적용범위 및 정의)

1.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목적물”이란 양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용역(개발, 연구, 컨설팅, 관리 등 일체의 역무제공을 말함)을 포함한 구매의 유형 또는 무형의 목적물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나. “용역업무”란 “수탁인”이 “이 계약”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용역의 내용을 말한다.
 - 다. “거래서류”란 각 계약서, 특수(특별)조건, 개별계약서 및 기타 첨부된 계약 서류를 말한다.
 - 라. “소프트웨어”란, (a) 여하한 코드 형식 또는 유형의 표현 매체로서 컴퓨터상 절차를 진행하거나 처리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시·명령 프로그램 (b) 여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사용 또는 유지에 유용하거나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 정보 (c) 소프트웨어 문서 (d) 개체 코드 및 (e) 소스 코드 등을 말한다.
 - 마. Open Source Software(“OSS”)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복사, 수정 및 재배포될 수 있고 OSL의 적용을 받는 여하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바. Open Source License(“OSL”)란, (i)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나 그 부속물에 관하여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하거나, (ii)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신의 소프트웨어나 그 부속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허여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뜻한다.
2. “이 계약”과 “OSL”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OSL”이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 (“목적물” 및 주문)

1. “엘지마그나”는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의 구매 시마다 주문서(전자주문서를 포함함)에 구체적인 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납기, 인도장소 등을 기재하여 “수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2.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 대하여 어떠한 일정 물량에 대하여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납품)

1. “수탁인”은 납기 내에 “목적물”을 인도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한다. “엘지마그나”가 필요에 의하여 분할인도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2. “수탁인”은 “목적물”의 품질, 표시사항, 배송설비, 재활용,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제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양 당사자가 그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성질상 인도 외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지정한 장소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상호·상표 등의 사용)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상호, 상표, 의장, 서비스표, 휘장 등 상대방의 영업 관련 표장(이하 “영업표장”이라 함)을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전항에 의거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 상대방의 “영업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를 임의로 오용, 전용할 수 없으며, 그 관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상대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부담)

“목적물”의 인도 전까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훼손, 도난 및 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은 “엘지마그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인”의 부담으로 하며, “목적물”의 인도 후에 발생한 위험은 그 원인이 “수탁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엘지마그나”가 이를 부담한다.

제6조 (압류/가압류)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인”이 점유하고 있는 “엘지마그나”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 대여품, 기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인”은 즉시 그 사실을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엘지마그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금지)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2.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하거나 위탁한 경우라도, “수탁인”은 자신의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3.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수임자, 하도급자 또는 수탁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인”에게 수임자, 하도급자 또는 수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권리귀속 및 활용)

1.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보유한 어떠한 권리도 “수탁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생성, 산출 또는 취득된 모든 무형 또는 유형의 산출물(이하 “결과물”이라 함)에 대한 권리는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엘지마그나”에게 귀속되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탁인”의 기보유기술에 대하여 “엘지마그나”와 그 자회사는 전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및 영구적인 그리고 재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엘지마그나” 또는 그 자회사가 “결과물”을 수정,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한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엘지마그나”에게 있다.
4.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권리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출원, 등록 기타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탁인”은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설명서 및 취급주의서)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경우 또는 “목적물”의 성질상 사용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고 취급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인”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엘지마그나”에게 “목적물”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사용설명서 및 취급주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지원)

1. “엘지마그나”가 요구하는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가 지정하는 인원에 대하여 “목적물”의 완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엘지마그나”가 지정한 장소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1조 (수탁인의 보증)

1. “수탁인”은 용역을 제외한 “목적물”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보증한다.
 - 가. “목적물”은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에게 제시한 사양, 명세와 일치한다.
 - 나. “목적물”은 재료와 부품을 포함하여 신품이며 재료와 제조의 과정에 하자가 없다.
 - 다. “목적물”은 “엘지마그나”를 포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권과 소유권 기타의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라 함)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수탁인”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업무”의 수행과정, 수행방법, 수행결과, “결과물” 및 기타 “용역업무”의 수행이 제3자의 어떠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3. “수탁인”은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공 및 “용역업무”의 수행이 “수탁인”에게 효력이 있는 모든 계약, 합의와 상충, 불일치하거나 그 불이행이나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을 보증 한다.

4. “목적물”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수탁인”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계 최신 기준 및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등 보안 관련 법령과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다음 i)-iv)를 준수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이하 “보안준수사항”이라 함): i)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근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데이터 또는 정보 등에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명령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함 ii)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목적물” 및 시스템 또는 “목적물”이나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삭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지 아니함 iii)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목적물”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지하지 아니함 iv)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함.
5. “수탁인”은 위 보안준수사항의 감지와 대응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보안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보안사고”라 함),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에게 (a) 그 발생 배경과 상황을 즉시 통지하고 (b) 지체 없이 (i) 사건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분석과 설명, (ii) 그에 대한 수정 및 방지 계획(prevention plan) 그리고 (iii) 패치, 업데이트 및 설정 변경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에게 위 보안사고를 통지한 직후, 양 당사자는 보안사고 조사에 상호 협력하며, “수탁인”은 다음을 포함한 “엘지마그나”의 문제 처리 과정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i) 조사 지원, (ii) 문제 되는 설비 및 작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권한 제공, (iii) “수탁인”의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 지원, (iv) 관련 법률, 규정, 산업 표준 준수에 필요하거나 “엘지마그나”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관련 기록, 로그, 파일, 데이터 및 기타 자료 제공. “수탁인”은 본 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 “수탁인”,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 업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비용, 손해 등 위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6. “제품”에 “OSL”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수탁인”은 모든 적용 가능한 “OSL”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엘지마그나”로 하여금 “제품”의 사용 및 배포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를 진술 및 보증한다.
 - 가. “제품”은 첨부(7) Open Source Software List외에 어떠한 다른 “OSS”도 포함하지

아니함

- 나. “엘지마그나”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있는 경우)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여 “엘지마그나”가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OSL”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함
- 다. 첨부(6) Open Source License 관련 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함
- 라. 첨부(7) Open Source Software List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여 “엘지마그나”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함께 제공하고, “OSS”에 여하한 변경(신규 버전 출시 포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 List를 수정하여 제공함

제12조 (사이버보안)

1.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요청 시 “수탁인”의 사이버보안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제공한 “보안 개발가이드라인”(이하 “보안 가이드라인”이라 함)과 “엘지마그나” 또는 OEM이 요청하는 요구사항(이하 “보안 요구사항”이라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양산해야 한다. 만일 “수탁인”이 공급하는 “제품”이 차량에 사용되는 경우 “수탁인”은 UNECE UNR 155, ISO/SAE 21434 및 사이버 보안 인터페이스 계약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은 “보안 가이드라인” 및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이버 보안 산출물을 양자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본 계약 종료 전까지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산출물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이슈, 취약점, “보안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 등에 대해 “수탁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5. “수탁인”은 “엘지마그나” 및 OEM 업체로부터 보고 받은 보안 사고, 이슈, 취약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수탁인”은 위와 같은 보안 문제 상황 발생 시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아래 기한을 준수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차량 관련 제품의 경우

- 매우 심각: 30일 이내
- 심각: 60일 이내
- 그 외: OEM과 합의된 기한에 따름

- 이 외의 제품의 경우
- 매우 심각: 60일 이내
- 그 외: 90일 이내

본 계약을 수행하는 부서에 위와 같은 대응기한보다 더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따른다.

6.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소프트웨어, 내부 정책 및 프로세스가 “보안 가이드라인” 및 기타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엘지마그나”는 최소 격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되 심각한 사이버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짧은 주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탁인”이 “보안 가이드라인” 및 기타 “보안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인”과 “엘지마그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수립해야 하며, “엘지마그나”는 개선안의 실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7. “엘지마그나”에게 공급하는 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다른 업체가 있는 경우 “수탁인”은 다른 협력업체들도 이 조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1. “수탁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없으며, “용역업무”의 수행과정, 수행방법, 수행결과, 결과물 기타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허위사실을 포함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목적물”의 납품완료일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각 개별계약서에서 이보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탁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수탁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본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상관 없이 하자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탁인”이 “엘지마그나”가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치유를 한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고, 치유에 소요된 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하자의 치유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치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엘지마그나”는 하자가 중대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면책)

1. “수탁인”은 “목적물”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에게 (i)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 (ii) 신체 상해(사망 포함), (iii) 유체동산, 부동산의 손해에 대한 주장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주장이나 소송으로 인해 “엘지마그나”와 “엘지마그나”의 임직원, “엘지마그나”의 자회사 및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의 임직원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직접 방어하기로 하는 경우, “수탁인”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 방어를 위하여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1항의 침해 주장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목적물”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의 판매나 사용이 금지될 경우, “수탁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목적물”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이 계속하여 사용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거나 “목적물”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수정·교체하여야 하며, “수탁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엘지마그나”는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4. “수탁인”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 주장 이외에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임직원, 이행보조자 기타 사용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 결과로서, 또는 “수탁인”이 “이 계약”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되거나 야기되는 것으로 주장된, 변호사비를 포함하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엘지마그나”와 “엘지마그나”의 임직원, “엘지마그나”의 자회사 및 “엘지마그나”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5. “제품”에 첨부(6) Open Source Software List에 기재되지 아니한 “OSS”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탁인”이 “OSL”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제3자가 “엘지마그나”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 조를 준용한다.

제15조 (리콜)

1. “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탁인”은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목적물”의 수거, 파기 또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시정조치(이하 “리콜”이라 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탁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리콜” 권고 또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수탁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엘지마그나”에게 “목적물”에 대한 “리콜” 권고 또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이에 차질 없이 응할 수 있도록 “엘지마그나”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리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탁인”은 “리콜”의 실시와 관련하여 “엘지마그나”가 소요한 비용, 기타 이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엘지마그나” 또는 “수탁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가. 자신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나.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정지, 해산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다.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신청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산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 라. 어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 또는 이행되지 않은 경우

2.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수탁인”이 제18조에서 정한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찰시 담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임직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엘지마그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수탁인”이 “엘지마그나”의 기준에 따른 평가 또는 점검 결과 “용역업무” 수행능력이 “엘지마그나”의 기준 이하로 판명된 경우

마. “수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업무”의 수행을 중지하는 경우

바. “목적물”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수탁인”이 다른 사업자(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목적물”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 “수탁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엘지마그나”가 판단하는 경우

3. “엘지마그나”는 상대방에 대한 6개월 전의 서면 통지로서 여하한 해지료 또는 손해배상책임 없이 “이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4.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5.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 대하여 해지시까지 유효하게 제공된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수탁인”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엘지마그나”로부터 제공받거나 임차한 시설물과 장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효과와는 별도로,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1. “수탁인”은, (i)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엘지마그나”로부터 지득하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등 “엘지마그나”의 정보, (ii) “이 계약”의 내용(이하 통칭하여 “비밀정보”라 함)을 “이 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탁인”은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인”은, (i)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경우, (ii) “이 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iii) “엘지마그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탁인”이 가공 또는 획득한 제반 정보를 “엘지마그나”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정 의무)

1. 각 당사자 및 그 임직원은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상대방(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로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다(다만, 이에 한하지 아니함).
 - 가.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다.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 라.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마.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 바.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수탁인”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 사. “수탁인”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토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 아.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 자.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각 당사자는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 가.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임직원을 상대로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인”은 “엘지마그나”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수탁인”은 “엘지마그나”로부터 제1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의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엘지마그나”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토록 한다.
- 다. “수탁인”은 이 계약서 외에 “엘지마그나”의 정도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정도 경영 실천서약서’를 숙지한 후 서약한다.

제19조 (제재 및 미국 수출관리 규정)

1. “수탁인”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인” 또는 직간접적으로 “수탁인”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이나 개인 및 해당 법인의 모든 자회사(통칭하여 이하 “계열사”라고 함)에 관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 가. “수탁인” 또는 “계열사”는 (i)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s, 이하 “OFAC”이라 함)이 관리하는 제재를 포함하여 유엔, 유럽연합, 미국 또는 그 외 국가에 의해 부과된 모든 무역 또는 경제적 제재(이하 “제재”라 함)를 위반하지 않으며, (ii)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United States Commerce Department'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라 함)이 관리하는 미국 수출 관리 규정(United State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chapter VII, subchapter C (§§730-774) (이하 “미국 수출관리규정”라 함)을 위반하지 않는다.
 - 나. “수탁인” 또는 “계열사”는 “제재” 또는 “미국 수출관리규정”을 회피하는 거래, 회피할 목적을 가진 거래 또는 위반을 시도하는 거래에 공모 또는 가담하지 않는다.
 - 다. “수탁인” 또는 “계열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유되거나 지배받지 않는다: (i) 개인이나 법인이 “OFAC”이 관리하는 미국

- 특별지정국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특별지정국”) 명단에 포함되거나 기타 “제재” 대상인 경우 (ii) 개인이나 법인이 크림반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제재” 대상인 국가나 지역에 소재, 설립, 거주 중이거나, 개인이나 법인이 속한 정부가 “제재” 대상인 경우 (iii) 개인이나 법인이 “BIS”가 관리하는 제재 기업 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거나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
2. “수탁인” 또는 “계열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유 또는 지배되고 있거나 그렇게 된 경우 “엘지마그나”에 즉시 통지한다.
- 가. 개인이나 법인이 “특별지정국” 명단 또는 기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경우
- 나.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 대상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 설립, 거주 중이거나, 개인이나 법인이 속한 정부가 “제재” 대상인 경우
- 다. 개인이나 법인이 “BIS”가 관리하는 제재 기업 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거나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
3. “엘지마그나”는 “수탁인” 또는 “계열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수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혹은 위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엘지마그나”를 면책한다.

제20조 (국제무역규제 관련 진술 보증)

1. “수탁인”은 “제품”의 개발·제조 과정에서 원자재, 부품,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무역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제1항의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수탁인”은 제1항에 따른 국제무역규제 관련 법규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품”과 관련한 대외적 Claim 또는 서비스 Claim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일체를 해결하여야 하며 “엘지마그나” 또는 “엘지마그나”의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엘지마그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엘지마그나”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청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탁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수탁인”은 “엘지마그나” 또는 제3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국제무역규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를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한다.
6. 제2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은 “수탁인”이 직접 거래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거래하는 하위 거래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엘지마그나”는 상대방이 제1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홍수,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소요,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원재료 조달의 불가능 혹은 어려움, 대내외적 노사분규, 운송 등 교통 장애, 대내외적 경제사정의 변동 등은 이 조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이 계약” 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통지의무)

1.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수신인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팩스(수신인에 의하여 전송이 확인되고,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의 효력은 당해 통지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완전합의 등)

“이 계약”은 “이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양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도 우선하며,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위 각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인천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첨부(3)

정도 경영 실천서약서

당사는 귀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의 공정·정직·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 경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귀사와의 거래에서 금품·향응 제공, 부정청탁, 문서·계수 조작 등 귀사의 정도경영 기준에 위배되는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귀사와의 거래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제의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엘지마그나 정도경영(lmjeongdo@lgmagna.com)'으로 알려드립니다.
3.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자료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귀사가 정도경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와의 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의 근절이 귀사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전제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서약서의 준수가 당사와 귀사 사이의 계약 및 협력관계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당사가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귀사와의 계약해지, LG 그룹과의 거래제한조치, 정도경영 위반 협력회사 등재·게시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4)

엘지마그나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엘지마그나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엘지마그나의 협력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엘지마그나가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한다. 협력회사는 엘지마그나와의 계약서 또는 준수 동의서를 통해 본 규범의 준수를 동의하고, 엘지마그나는 협력회사가 본 규범에 따라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엘지마그나는 협력사 구매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ESG 기준을 협력사 선정 과정에 적용한다. 또한 협력회사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는지를 매년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모니터링 한다. 엘지마그나는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사전에 협력회사에 공지한다. 엘지마그나(및/또는 외부 심사원)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협력회사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가 충돌할 경우, 두 규정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협력회사가 행동규범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거부할 경우, 엘지마그나는 해당 협력회사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인권 존중 (Labor)

A. 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최수노동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협력회사는 엘지마그나에 공급하는 목적물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기타 금지 지역, 금지 단체(기업)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및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및 유사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협력회사는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을 작성, 체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1부씩 제공해야 한다. 여권, 근로 허가증 등 정부가 발행한 공식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당 서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도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보관(문서 보관기간: 최소 12개월 이상)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고용 관련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수수료를 근로자가 지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B.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연령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추고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이하 "아동"이라 함)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면 안 된다.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동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지원/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C. 과도한 연장 근로 금지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 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 또는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응급 또는 비상상황의 경우는 예외임).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한다. 모든 연장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인 모든 사내 협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으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근로자가 알아보기 쉽게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 및 자격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시급보다 높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지각 등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인정).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 차별/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Gender Based Violence),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대우를 받을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채용, 급여,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포함한 채용 및 고용 관행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표현,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군필여부, 유전자 정보, 질병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징계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종교적 활동과 장애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조치를 취해야 한다.

F.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협약

직장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열린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따라서 근로자 및/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힘이나 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 조건 및 경영 방식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의견과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집단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이 현지 법규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협력회사는 합법적인 근로자 협의체 결성을 허락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Health & Safety)

A. 산업 안전보건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위험요인(화학물질, 전기 및 다른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감소 대책(Hierarchy of Controls)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협력회사가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및 해당 위험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조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 및 장소 제공 등 성별에 따른 대응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B.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상황보고, 비상상황 전파 및 대피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다. 비상대응 계획에는 화재감지 및 진압 장비, 적치되어 있는 장애물 등 방해요소가 없는 대피로 및 비상구, 비상 연락망 및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구는 대피방향으로 상시 개방 가능해야 하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또는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것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비상집결지는 실내·외에 모두 마련하고, 위치를 표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피훈련 후에는 평가(대피시간 측정 및 개선사항 파악)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피훈련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식당, 기숙사 등 포함) 내 다양한 상황(주간/야간)에서 진행해야 한다.

C.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 및 시스템을 이행, 확립해야 한다: a) 사건/사고 보고 b)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 분류, 기록 c) 필요한 치료 제공 d)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예방 조치 수립(근로자 교육 포함) e) 치료 후 사업장 복귀 지원.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D.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들은 최대한 작업환경에서 제거하되 불가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 또는 적절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유해인자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개인보호구(PPE)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E.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협력회사는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보조설비 도입, 작업대 높낮이 조정 등)하거나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한다.

F. 설비안전

협력회사는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안전장치(개방 시 설비가동 중단, 인터록)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G. 식당과 기숙사 관리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깨끗한 화장실과 먹는 물,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온수, 조명 및 환기장치,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H.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해당되는 경우 성별 및 연령과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보복의 우려 없이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Environment)

A. 환경 법규 준수 (인허가와 신고의 의무)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취득, 유지하고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B. 오염예방과 자원 보존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 유해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해당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취급 중 누출 시 토양, 우수 오염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연 1회 이상 누출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D.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운반업체 포함)는 법적으로 적절하게 운반/처리, 폐기가 가능한지 평가(현장점검 포함) 후 선정한다. 폐기물 데이터는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방지설비의 처리효율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F.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국내외 환경규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 및 인체 위해 우려 독성물질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엘지마그나의 최신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는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 관련 규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G. 물 관리

협력회사는 각각 취수, 사용, 배출 시 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모든 폐수는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상시 기준치 내로 배출하도록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H.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전사 차원의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Scope 1&2 및 Scope3 주요 Category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공개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I. 생물다양성 및 산림 벌채 관리

협력회사는 생물 다양성이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산과 숲을 광범위하게 개간하는 산림 벌채는 지구 기후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노력에 동조하여 산림 벌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관행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업 윤리 준수 (Ethics)

A. 정도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엘지마그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무관용 정책으로 금지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B. 정보 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 조작 및 허위진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C.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엘지마그나뿐 아니라 고객 및 하위 협력회사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D.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회사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근로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가공,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G. 국제 거래 질서의 존중

협력회사는 엘지마그나에 납품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제무역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특정 국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 국제제재 대상과의 거래와 연관된 원자재/부품/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금지를 의미하며, 국제제재대상과의 거래를 사후에 인지할 경우 즉시 엘지마그나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말한다. 엘지마그나는 필요 시 공급망 내 제재대상과의 거래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협력회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5. 책임있는 광물/원자재 관리 (Responsible sourcing)

협력회사는 불법적·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 및 광물 사용 금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지침”에 따라 엘지마그나에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분쟁광물), 그리고 코발트에 대한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엘지마그나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 및 코발트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하며, RMAP 인증 또는 대체 가능한 인증평가 프로그램에서 인증받은 제련소, 정련소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협력회사는 또한 엘지마그나의 요청 시 관련 실사 현황을 제공해야 하며, 엘지마그나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 및 코발트의 원산지 및 제련소, 정제회사 정보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6.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A. 경영진의 준수 의지 선언과 책임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의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기업의 준수 의지를 문서로 공개하고, 이를 근로자가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준수현황을 연 1회 이상 검토해야 한다.

B.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기적 준수평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근본원인을 분석 후 시정/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C. 리스크 평가와 관리

협력회사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하여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 크고 영향이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D.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E.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 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회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엘지마그나와 공유해야 한다.

F.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 접근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G. 감사 및 평가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본 규범의 내용,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H. 시정조치

협력회사는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I. 문서와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J. 협력회사의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참조 자료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본 규범을 작성하였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ILO Fundamental Conventions

- 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87)
- o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98)
- 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29)
- o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105)
- o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138)
- 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182)
- o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99 (No.100)
- o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111)
- 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155), and the Promotional Framework, 2006 (No.187)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Eco Management & Audit System

Ethical Trading Initiative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ISO 14001 and related standards – Environmental management

ISO 45001:2018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

- o SA 8000

United State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첨부(5)

국제무역규제에 관한 법규준수 서약서

엘지마그나는 세계 각국의 국제무역규제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상생협력 파트너로서 엘지마그나의 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엘지마그나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의거하여 모든 국제무역규제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무역규제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국제제재대상과의 거래와 연관된 원자재/ 부품/ 제품 및 서비스를 엘지마그나에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4. 엘지마그나에 공급중인 원자재/ 부품/ 제품 및 서비스가 제재대상과 연관된 거래일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엘지마그나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첨부(6) Open Source License 관련 확약사항

“수탁인”은 Open Source License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는 “이 계약”의 중요한 확약사항임에 동의한다.

1. “제품”에 첨부(6) Open Source Software List에 기재되지 아니한 “OSS”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탁인”이 “OSL”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엘지마그나”, 계열사, 협력사 및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등을 배상한다.
2. “제품”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 “수탁인”은 다음을 준수하되, 세부 사항은 해당 “OSL”조건을 따른다(예: GPL-2.0, LGPL-2.1).
 - (a) “엘지마그나”에 공개 대상 소스코드를 제공함 (본 항목의 소스코드란 “OSL”에 따른 Open Source URL과 그 수정된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해당 “OSS”에 적용되는 “OSL”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소스코드 전체 및 업데이트된 공개 대상 소스코드를 의미함)
 - (b) “제품”에 “엘지마그나”의 지적재산권이나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보안 정보, 혹은 Proprietary License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제품”이 수개의 “OSL”를 사용하는 경우, 각 “OSL”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제품”의 설치·실행을 위하여 특수 명령, 인증 정보 및/또는 암호가 필요한 경우, “엘지마그나”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엘지마그나”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위 정보의 배포를 허용한다(예: GPL-3.0, LGPL-3.0).
5. “제품”이 업데이트된 경우, 첨부(5) 각 조항을 준수하여 “엘지마그나”에 변경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지체없이 첨부(6) Open Source Software List를 수정하여 제공한다.

첨부(7) Open Source Software List

오픈소스 분석에 사용한 방법 (툴이 사용되었을 경우 툴 정보)	Example) FOSSLight Scanner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음
분석 결과서	(첨부 요망)
OSS 사용여부	Example) 목적물에는 오픈소스가 포함됩니다. (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 Guideline	
Binary Name or Source Path	Binary 파일명 혹은 (Source Code 로 전달될 경우) Source Path
OSS Name	사용된 OSS 의 이름
OSS Version	사용된 OSS 의 버전
License	OSS 의 License (SPDX License Identifier : https://spdx.org/licenses/)
Download Location	OSS 를 다운로드한 URL 혹은 VCS 주소
Homepage	OSS 의 홈페이지
Copyright Text	저작권 고지
License Text	License Text (SPDX 에 포함된 License 일 경우 생략 가능)
Modified	OSS 가 수정되었는지 여부
Comment	OSS 관련 기타 정보

List									
Binary Name or Source Path	OSS Name	OSS Version	License	Download Location	Homepage	Copyright Text	License Text	Modified	Comment
							-	-	-

(부속 계약1)

품질·납기 보증계약

“엘지마그나”와 “수탁인” 양 당사자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목적물”(이하 “목적물”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 납기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목적물”의 품질보증, 납기보증 등 기타 필요한 특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으며 이 계약의 용어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 (품질관리)

1. “수탁인”은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재료, 설비, 장비 기타 물품의 수입(收入, 이하 같음), 보관, 제조, 검사 및 수송 등 “엘지마그나”에 대한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든 업무 단계에 있어 “목적물”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시한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정관리)

1. “수탁인”은 “목적물”의 생산 및 보관 과정에 있어 엄정한 공정관리, 작업의 표준화, 작업 및 설비의 적정 분배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제1항의 실시 상황을 서면화하여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엘지마그나”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서면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수탁인”이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엘지마그나”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측기 및 수입품 관리)

1. “수탁인”은 “목적물”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수준의 계측기, 시험기, 치공구 및 설비 등을 적정 수량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수입품에 대한 품질 검사·확인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엘지마그나”가 그 사항을 요구할 때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 검사 및 그 기록)

1. “수탁인”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한 즉시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을 지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담은 서면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위 “목적물”의 인도과 함께 “엘지마그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탁인”이 2회 이상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엘지마그나”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초기 시제품 승인)

“수탁인”은 “목적물”의 개발 단계에서 초기 시제품 검사 및 부품 인정시험 등을 통하여 “엘지마그나”의 품질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제조 등”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7조 (“목적물” 변경)

1. “수탁인”은 “목적물”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엘지마그나”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엘지마그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엘지마그나”는 언제든지 “목적물”의 스펙과 디자인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용, 납기 등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거래의 관리)

1. “엘지마그나”는 “목적물”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시로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인”의 영업 시간 내에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수탁인”의 실행 현황을 진단·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거래의 평가 및 조정 심의 시 평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탁인”은 품질의 유지 및 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엘지마그나”의 평가결과를 “목적물”의 제조시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불량품 처리 및 조치)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을 청구(또는 “목적물”의 가액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리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수탁인”의 귀

책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을 두고 양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2.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공정 불량률을 기준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적물”에 대한 생산공정 목표 불량기준을 설정하며, 불량률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탁인”은 자체 검사를 강화하여 제조·납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수탁인”이 자체 검사를 강화하였으나 일정기간(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량률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엘지마그나”와 “수탁인”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제3의 검사기관에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 납품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발생한 검사비용은 “수탁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발주)

1.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 대하여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른 “발주”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담은 주서면을 “엘지마그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탁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가. 주서면 번호 또는 제조지시 번호(Work Order No)
 - 나. 거래선 번호 및 거래선명
 - 다. 주문일자
 - 라. 일련번호 및 항번
 - 마. 도번(PART NO)
 - 바. 품명 및 규격
 - 사. 단위
 - 아. 납기
 - 자. 수량
 - 차. 기타 “엘지마그나”가 정한 사항
2. “엘지마그나”는 주서면의 기재 내용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수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수탁인”은 “엘지마그나”가 발송한 주서면을 송부받은 즉시 검토하여 오류시, 오기 등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엘지마그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속 계약2)

납품수량 보증계약

양 당사자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목적물”(이하 “목적물”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수량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목적물”의 품질보증, 납기보증 등 기타 필요한 특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으며 이 계약의 용어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 (수탁인의 출하검수 및 엘지마그나의 수입검수)

1. “수탁인”은 “목적물”을 출하하기 전에 납품수량이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수(이하 “출하검수”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엘지마그나”가 아래 제2항에 따라 “수입검수”할 때 납품수량의 일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마다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엘지마그나”는 자신의 수입검수 기준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의 입회 아래 납품수량이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검수(이 계약에서 “수입검수”라 함)를 실시하며, 이는 “엘지마그나”가 “수탁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인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완료된다.
3.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의 납품수량의 일치에 대한 보증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수입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항의 “수입검수” 결과 납품수량부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엘지마그나”는 납품표 또는 확인표상의 수량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인수증”을 “수탁인”에게 교부한다.

제3조 (납품완료 후 수량보증)

1. “수탁인”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엘지마그나”의 “인수증” 교부에도 불구하고 “납품완료”일로 부터 2년 내에 납품수량의 부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량의 부족분을 “엘지마그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따른 “수탁인”의 의무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수탁인”에게 수량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탁인”은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엘지마그나”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속 계약3)

구매확인서 전환 계약

양 당사자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목적물”(이하 “목적물”이라 함)이 수출용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금결제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목적물”이 수출용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금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으며 이 계약의 용어는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 (결제방법)

“엘지마그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탁인”으로부터 “개별계약”에서 정한 수출용 물품을 납품 받은 후, “수탁인”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출용 물품에 대한 대금을 “엘지마그나”의 지급규정에 따른 정기지불일에 결제한다.

1. “엘지마그나”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탁인”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적용시기)

구매확인서에 의한 대금결제는 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타)

1. 원활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수탁인”은 서류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2.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인”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엘지마그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